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조항 정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9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조항 정비 등	2
2.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같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조항 정비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향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용규정에서 제외하고 임원 선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3항·제4항, 제3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향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16조----- -----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 및 제39조를 -----.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서 신설>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 ----- ----- . 다만, 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② (생략)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u>사장이</u> 임명한다. ⑤·⑥ (생략) 제24조(준공확인) ①·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u>신항만건설촉진법</u>」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생략) ② <u>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u>	<u>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임명한다.</u> ④ ----- ----- <u>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준공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신항만건설 촉진법</u>」 제9조제1항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사의 감사(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를 준용한다.</u> <u>이 경우 “회사”는 “공사”로,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u>
--	--

나.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2022. 8. 18.)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공기업에 해당했던 4개 항만공사¹⁾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음.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 변경 현황]

구 분	종 전	변경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 개정안은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①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항만공사의 감사 임명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1)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및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권한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공공기관운영법」 준용규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임원 임명·해임 관련 규정 준용	<삭 제>
② 감사 임명 시 협의절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③ 임원 임명 시 추천절차 ※사장·감사제외	사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u>사장이</u> 임명	사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
④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감사의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하는 규정 준용	<삭 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이사회가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이 필요해 보임에도 준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행법 제11조의2(개정안 제11조의3)²⁾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 「항만공사법」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규정」

준용조항 (공운법)	내 용	개정 사항	사 유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유지	기타공공기관 적용 필요
제22조 제1항	이사회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 장 해임 또는 해임건의 요청	삭제	항만공사법 제11조의2와 중복
제25조 제5항	공기업의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	삭제	기타공공기관(공운법 非대 상)은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제31조 제6항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유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도 적용 필요
제34조제 1항제2호	임원 결격사유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유지	
제35조 제1항, 제3항	이사와 감사의 책임	유지	
제35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기재부 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직무 불이행, 게을리한 경우)	삭제	기타공공기관(공운법 非대상)은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제36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 기재부 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직무수행실적 저조한 경우)	삭제	기타공공기관(공운법 非대상)은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제38조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유지	기타공공기관 적용 필요
제39조	회계원칙	유지	
제48조 제8항	기재부 장관이 경영실적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	삭제	기타공공기관(공운법 非대 상)은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에서 경영평가 실시

2.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 임명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 제38조제2항, 제39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공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u>감사에게</u>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감사</u>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회의) ①·② (생략) ③ <u>사장 및 감사</u>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u>회의 비상임위원 중 감사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u> ④ <u>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u> 제11조의3(해임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감사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에</u> ---. ----- <u>감사 또는 감사위원회</u>-----.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장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u>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 ----- ----- <u>다만, 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임명한다.</u>
---	---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u>사장이</u> 임명한다. ⑤·⑥ (생략)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u>감사</u>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생략)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u>자</u>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공사의 <u>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사장이</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 ----- <u>감사</u>(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감사(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공사”로,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 ----- <u>사람</u>(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 <u>임직원</u>(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
---	--

나.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³⁾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은 감사를 겸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구 분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적용여부	비고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	의무설치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기타공공기관	X	-

당초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왔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겸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여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고 울산항만공사는 감사를 임명하였음.

그러나 최근의 공기업 지정기준 변화에 따라 4개 항만공사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됨.

따라서 현재 4개 항만공사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기준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은 현재 3개 항만공사가 두고 있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각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3명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따로 감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내부건제 기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419